

# - 행정관청, 불법 콩나물 수거, 검사 그치지 않고있다-

**관청의 일선 위생공무원도 콩나물은 채소이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은 부당함을 알면서 상부의 지시 이니까 마지 못해 수거,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는 수은만을 0.1PPM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수은계 농약은 이미 10여년전에 없어지고……**

**콩** 나물은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1116호로 시설작물생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농산물로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류이며, 보건사회부 고시 제86-1호 「기본식품관리령」에 의거 채소류(엽채류)로 되어있어 그 소관부처는 농림수산부 유통국 채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전월(1월)에 기술한바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선 행정관청의 재배 중에 있는 콩나물을 수거하여 검사하는데 대하여도 그 행위 자체가 집권남용 내지는 탈법하다할 것이다.

콩나물의 재배 및 유통에 대하여는 명확한 적용 법규나 행정제도 등이 설정되어 있지않다.

바로 이러한 제도부재에서 오는 공백 상태에서 행정관청의 일선 위생실무자가 콩나물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30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각 시·도로 콩나물, 두부등 국민다소비식품 제도철저“(감

시311-54-10706호)란 공문이 하달되었다.

각 시·도는 하급 행정기관인 시, 군, 구에 이 공문에서 지시하는 뜻을 음미해 보지도 못한채, 그저 주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하달”이라고 생각했음인지 보사부 지시내용 그대로 일선 행정관청에 다시 하달하게 이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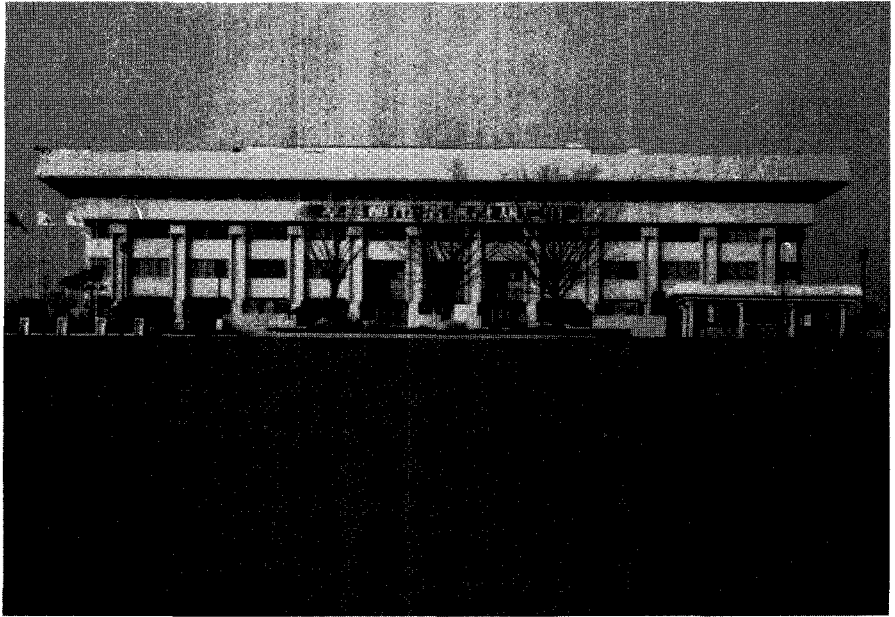
더구나 어떤 지방관청에서는 기일까지 정해놓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달 하기도 하였다.

일선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위생담당 공무원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도 이행하였다는 시늉이라도 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근접한 법규를 찾아야 되고, 바로 그 근접한 법규는 「식품위생법」이 되는것이다.

바로 콩나물이 국민이 먹는 광의의식품이라는 해석에서 발상된 것이다.



보사부고시 제86-1호(86. 1. 13) 「국민식품관리요령」에도 콩나물은 배추, 무우, 양파등과 같이 “채소류”로 분류되어 있고 일선 실무자들도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니고 농산물이라고 개인적인 사견을 들어 말하고 있다.

허나 보건사회부에서는 콩나물이 먹는 식품이고 보니 혹 콩나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면, 소관부서인 농림수산부 보다도 보사부쪽에 쏟아지는 질책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하급관청에 지도 감독을 하라고 정기적인 하달만을 하고있다.

그러나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보사부령 제206호(67. 12. 23)로 공포되고 보사부고시 제86-50호(86. 10. 24)로 9차 개정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서 자연식품등의 성분 및 규격을 정해놓고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대한 잠정규정을 0.1PPM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그래서 검출 되지도 않는 수은만을 검출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콩나물을 수거 검사하고 있는 것이다.

콩나물에서 규정되는 수은은 1976년까지 주로 일본 등지에서 밀수입 되던 「우스프톤」과 그후 국내에서 범씨종자 소독약으로 개발되어 1978년까지 생산된 「베르크롬」에서나 검출되고 있으나,

그후 수은이 인체에 해가된다 하여 정부에서 생산금지 시켜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 채소류나 기타 농산물에 사용되는 어떠한 농약도 수은계통은 일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세계 전 국가가 생산, 보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보사부고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의 콩나물 수은함량에 대한 잠정규정은 이미 10여년 전에 이미 현실성 있는 규정으로 개정 내지는 삭제 되었어야 옳을 일이다.

허나 행정은 이러한 현실에 미치지 못함인지 유감(?) 스텝계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법규가 통용되고 있어, 막대한 인력내지는 행정낭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에 엉뚱한 우리 두체업자들만이 희생 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콩나물을 수거, 검사하는 데는 국민된 도리로서 별 이의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의 어느조항 이라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떠나 정부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국민건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는 이해 할 것이다.

허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그것도 유통중에 있는것이 아니고 재배중에 있는 콩나물은 마구 잡이로 수거, 검사하는 것은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나 무우를 임의로 뽑아다가 일방적으로 검사한다는 것과 다를점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천직할시 관할 남구청에서는 한수더 떠서 관내 두채업자 들에게 연락하여 콩나물 일정량씩을 제출하라고 지시 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두채업자가 자기네들의 하수인이나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콩나물의 복잡한 상태를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업자 스스로 미리 알아서 문제

가 되지않을 콩나물로만 골라서 제출하라는 암시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최우간 콩나물 업자가 영세하다 하여 경시하게 다루는 태도가 부당한 것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자질과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행정부서에서 펼치는 콩나물에 대한 행정 자체가 모두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채업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된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국민된 의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민주화된 현재에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막을수도 없는것이다.

영세하고 무지하다 하여,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발상은 19세기 이전 군주시대 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두채업자에게 재배중인 "콩나물을 제출하라"고 지시, 말썽을 빚고 있는 인천 남구청

우리 두채업자들도 국민보건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행정관청의 일부 부당한 처사에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 쯤이야 하나의 국민된 도리로서 참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콩나물에 대한 행정부재상태에서 그 처사가 부당함을 알면서 근본적인 체제 내지는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채 서로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업무의 소관 시비나 벌이고 있는 작태는 구시대적인 무사안일 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부처에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여 문제가 있을때만 「식품위생법」에 콩나물에 대한 처벌 사항만을 유추준용 한다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규정, 제도화 하여 콩나물의 재배 및 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잠정규정이라도 정하여 두채 업자가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마음놓고 그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로 부터 농약 콩나물의 공포를 씻게함과 동시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콩나물

이 채소중에서도 제일 깨끗하고 그 영양 면에서도 우수함을 알게 하므로서 조상의 슬기가 담긴 콩나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두채업자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전통 식품인 콩나물이 국민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재배나 유통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스스로가 자제를 하므로서 우리 업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정부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소득 시대에 고급화되어만 가는 국민 식생활 수준에 콩나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두채업자에 의하여 그 저하속도를 더 가속화 시킨다면 우리의 설 땅을 우리 스스로에 의하여 더빠른 속도로 파헤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모두가 자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